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합5548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이효림

피 고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윤성범, 허형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고 3,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윤섭

변론 종결 2020. 6. 16.

판결 선고 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713,740,489원 및 그중 709,844,062원에 대하여 2014.11. 2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10%, 그 다음 날부터 2019. 9. 9.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C'라 한다)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7,869,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의 계좌(G은행 H)에 관하여 F과 피고 D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700,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과, 피고 E의 계좌(G은행 I)에 관하여 F과 피고E 사이에 2014. 9. 5. 체결된 261,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1,107,869,249원, 피고 D은 700,000,000원, 피고 E은 261,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등 체결

1) 원고는 2009. 4. 21. 보증원금 9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21.부터 2010. 4.20.까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와 F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해당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09.4. 23. G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원금은 7억 2,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6. 17.로 각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건의 발생과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등

1) 2014. 10. 2. 피고 A의 당좌부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 위 피고를 대위하여 G에 대출원리금 727,870,684원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7,400,84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위 피고와 J 등으로부터 2017. 8. 30. 8,982,297원, 2017. 9. 6. 1,382,881원, 2017. 9. 13. 260,604원을추가로 회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회수금액 상당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각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191,488원이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 A 및 J, F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704,939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11. 2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다. F의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송금

1) F은 2014. 9. 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 대금 5,751,008,004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중 47억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위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나머지 대금 961,008,004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961,008,004원을 송금받고서 그중 7억 원을 피고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 이하 '피고 D 계좌'라고만 한다)로, 2억 6,1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피고 E 계좌'라고만 한다)로 각 송금하였으며, 2014.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9.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해당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금액 상당인 709,844,062원(= 727,870,684원 - 7,400,840원 - 8,982,297원 - 1,382,881원 - 260,604원)에 확정손해금 3,191,488원 및 채권보전비용 704,939원을 더한 713,740,489원 및 그중 위 709,844,0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9. 9.까지는 연 8%(이상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이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던 2014. 9. 5., F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961,008,004원 중 7억원을 피고 D 계좌로, 2억 6,100만 원을 피고 E 계좌로 각 송금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 또는 심화시켰다. 당시 F과 피고 D, E 사이에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의 실소유주가 F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바, 해당 의사합치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F과 피고 D, E 사이의 위 각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다만,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위 구상금채권액 상당인 1,107,869,249원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1,107,869,249원, 피고 D은 7억 원, 피고 E은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위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0. 10. 피고 C 측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 간주하고 향후 법정 소송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② 한편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전남 화순군 K 전 1,894㎡ 외 7필지 중 각 1/4 지분(이하 통틀어 '화순군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6. 26. L에게 화순군 토지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는 2015.경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L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2. 'F은 적극재산으로 화순군 토지지분과 이 사건 각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L에게 화순군 토지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의 사해의 사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5가합524843호). 원고는 2016.5. 2.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4. 10. 10. 무렵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였던 점,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화순군 토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 6. 26. 그중 화순군 토지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F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증여일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마저 매도한 행위 역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0. 무렵 또는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F이 사해의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9. 8. 8. 피고 C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나 제5호증, 을다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 계좌로 송금된 7억 원이 2014. 9. 11.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② F은 피고 A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4. 9. 16. 위 피고의 임원이자 F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M에게, F이 정리할 채무 및 M이 피고A을 위해 F 대신 부담한 채무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3M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4억 5,000만 원으로 F의 화순군수 선거 관련 차용금, 피고 A관련 채무, F의 N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한 사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피고 E 계좌로 2억 6,100만 원이 송금된 후 2014. 9. 7.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위 피고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포함한 2억7,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중 2억 6,000만 원이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되었는데, 당시O은 해외출국 중이었다가 2014. 12. 14. 입국한 사실, ⑤ 피고 E이 'P'이라는 상호로 피고 A과 운송거래를 하면서 위 피고에게 약 149,897,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일시	금액	설명
2014. 9. 11.	6,000만 원	‘E P회사’ 계좌로 출금
2014. 9. 12.	5,000만 원	Q의 계좌로 출금
2014. 9. 15.	2,000만 원	적요란에 ‘F(임대)’라고 입력됨
2014. 9. 11. ~ 2014. 9. 15.	1억 3,000만 원	현금으로 출금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2014. 9. 5. 7억 원을 피고 D계좌로, 2억 6,100만 원을 피고 E 계좌로 각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F과 위 피고들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송금액이 F에게 회수되거나 F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그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소로써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F에게 복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은 2014. 9. 16. 무렵 별다른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무렵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2014. 9. 11. 피고 D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7억 원 외에 는, F이 같은 달 16. M에게 교부한 4억 5,000만 원의 출처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F이 위 7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피고 D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위 돈이 M을 통하여 F이 지정한 용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 출금된 나머지 2억 5,000만 원도 F에게 회수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억 7,000만 원 중 2014. 9. 15. 출금된 2,000만 원은 그 적요란의 입력내용에 비추어 F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11. 출금된 6,000만 원은 F이 실질사주인 피고 A의 피고 E에 대한 운송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서 이 역시 F의 의사에 따른 사용으로 보인다. 당시 O은 해외 출국 중이었으므로,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O을 위하여 또는 O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 1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전후로 출금된 1억 8,000만 원도 피고 E의 주장대로 F에게 교부되거나 F의 Q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F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 피고 E 계좌로 입금되었던 2억 6,100만 원 중 위 각 출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 상당도 다른 경로로 F에게 회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위 2억 6,100만 원이 피고 E 계좌로 입금된 때로부터 수일 내인 2014. 9. 11. 약 260만 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는 해당 소로써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이수웅, 판사 여동근